

울산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가단1126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7. 7. 25. 접수 제22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2020. 11. 10. 사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90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24. “망인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606,062원 및 그 중 211,910,123원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11. 22. 창원지방법원 2021차전5583호로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6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7. 7. 25. 접수 제22134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이미 망인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는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형제들인 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창원지방법원 97나6326)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0.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고, 위 판결의 판단에 따라 피고와 B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해당 최종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

별지